

동대구 동화아이위시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당첨자 (예비자 포함) 제출서류 리스트

■ 기본 서류

※ 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02)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유형 필수 해당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모든 사항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	주민등록표초본		모든 사항 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원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다자녀 특별공급 추가 확인 서류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어 [세대구성]상 [3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추가 확인 서류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노부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만30세이상 미혼 직계비속(자녀 등)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청약자 본인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자녀 등) 미혼여부 확인

■ 무주택여부 소명 서류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관련)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서류제출 대리인은 가족에 한함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처 - 견본주택내 상담석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6-1번지)

문 의 - 053- 752-3355

★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0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이력 이 모두 표기된 발급 분에 한합니다.
- ③ 위의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